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문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보고객지원국<br>정보시스템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 장 최일승 042-481-5099<br>사무관 윤석영 042-481-5117 |
|  | 2016년 6월 2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>인터넷매체는 6월 26일(월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특허청 홈페이지 ‘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’ 3년 연속 획득

- 사회적 약자의 특허정보 이용편의성 증진 노력이 결실 맺어 -

- 특허청은 공식 홈페이지(www.kipo.go.kr)가 3년 연속(15년~17년)으로 ‘웹 접근성\* 품질인증마크’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. 이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편리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.

\* 웹 접근성(Web Accessibility) : 장애인,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함

### 〈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제도 〉

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국가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서면 평가, 전문가 평가, 사용자 평가의 3단계 심사를 통하여 모든 사용자가 제한 없이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우수 사이트에 대하여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

- 특허청은 그동안 사용자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.
- 상반기에는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미지를 음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였고,

-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가 키보드를 이용하여 초점을 이동할 때 화면에서 명확한 시각적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재정비하였다.

\* 스크린 리더 : 시각장애인에게 화면의 내용과 자신이 입력한 키보드 정보나 마우스 좌표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말함

- 앞으로는 사용자의 특허정보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인이 자주 사용하는 서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,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필요한 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식 검색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.

- 또한,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 확대를 위해 웹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재분류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\* 공공누리 :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로써 저작권 침해 걱정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안내하는 표시 기준을 말함

- 특허청 최일승 정보시스템과장은 “특허에 관심 있는 모든 이용자가 특허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해 나가겠다”고 덧붙였다.

#### <붙임>

1.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
2. 웹접근성 품질 평가 항목(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1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정보고객정책국 윤석영 사무관(☎ 042-481-511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붙임2

## 웹 접근성 품질 평가 항목

### □ 「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1」 평가 항목

| 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침               | 검사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인식의 용이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1 대체텍스트        | 1.1.1 (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)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.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 | 1.2.1. (자막 제공)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,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3 명료성          | 1.3.1. (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)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1.3.2. (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) 지시 사항은 모양, 크기, 위치, 방향, 색,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.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1.3.3. (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)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.5대 1 이상이어야 한다.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1.3.4. (자동 재생 금지)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3.5. (콘텐츠 간의 구분)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.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운용의 용이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1 입력장치 접근성     | 2.1.1. (키보드 사용 보장)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2.1.2. (초점 이동)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.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2.1.3. (조작 가능)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2 충분한 시간 제공    | 2.2.1. (응답시간 조절)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2.2.2. (정지 기능 제공)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3 광과민성 발작예방    | 2.3.1. (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) 초당 3~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.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4 쉬운 내비게이션     | 2.4.1. (반복 영역 건너뛰기)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2.4.2. (제목 제공) 페이지, 프레임,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4.3. (적절한 링크 텍스트)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.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이해의 용이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1 가독성          | 3.1.1. (기본 언어 표시)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2 예측 가능성       | 3.2.1. (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)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(새 창,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)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.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3 콘텐츠의 논리성     | 3.3.1. (콘텐츠의 선형 구조)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3.3.2. (표의 구성)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4 입력 도움        | 3.4.1. (레이블 제공)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4.2. (오류 정정)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.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견고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1 문법 준수        | 4.1.1. (마크업 오류 방지)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,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.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| 4.1.2. (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)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|